

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(김광성 의원)

의안 번호	42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: 2022년 10월 20일

발 의 자 김광성 의원

찬 성 자 김성기, 이은미, 남진삼의원

1. 제안이유

「평창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(배부·보고 및 회부)제2항과 제57조(의안 등의 상정시기)제1항 각 호의 규정이 상호충돌함에 따라 지속적인 회의 규칙 위반이 발생하여, 「평창군의회 회의 규칙」 일부개정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‘배부·보고 및 회부’ 규정 수정(안 제23조)
- 나. ‘의안 등의 상정시기’ 규정 삭제(안 제57조)
- 다. ‘의안 등의 상정시기’ 규정 신설(안 제23조의2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불임 참조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- 다. 입법예고 : 생략 - 「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3호 근거

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의장은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보고를 거쳐 위원회에 회부한다.

다만,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.

제57조를 제23조의2로 하고, 같은 조(중전의 제57조)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위원회는”을 “의장은”으로, “위원회에 회부(재회부는 제외한다)된”을 “접수된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“5일”을 “7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“7일”을 “10일”로 하며, 같은 호 나목 중 “5일”을 “7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위원장”을 “의장”으로, “그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하고 의사일정”을 “의사일정”으로 하며, 제57조는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가.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안: 7일

나. 보고 또는 의견청취를 해야 하는 보고서 및 계획서: 5일

3. (생략)

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위원의 심사 준비에 충분한 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의안 등에 대하여는 그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하고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있다.

제57조(의안 등의 상정시기)

가. -----
----- 10일

나. -----

7일

3. (현행과 같음)

③ 의장은-----

----- 의사일정-----

-----.

<삭제>

[관련법령]

지방자치법

제52조(의회규칙)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

제83조(회의규칙)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 중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·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의회 김광성의원
연락처	(033) 330 -2506